



보도자료

배 포	2020. 5. 8.(금)
담 당 과	마스크총괄반 수급지원팀
과 장	신 준수(☎043-719-3302)
서 기 관	유대규(☎043-719-3316)

5월 8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발표

오늘 총 999만 9천개 공급

- 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**5월 8일 공적판매처**를 통해 공급 되는 **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**하였습니다.
 - 오늘(5.8.)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999만 9천개입니다.

(단위: 만 개)

구분	총계	일반 공급			우선 공급		
		약국	하나로마트	우체국	의료기관	특별공급	기타
5.8.(금) 공급예정량	999.9	673.5	10.1	19.9	119.9	4.5	172

- **정책적 목적**으로 **군장병**을 위해 **국방부**에 **172만개**를 공급합니다.
- □ 오늘(5.6.)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전국의 ¹⁰약국과 ²⁰농협하나로 마트(서울·경기 제외), ¹⁰우체국(대구·청도 및 읍·면 소재)입니다.
 -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'금요일'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'5·0'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, 주 1회·1인 3개씩 구입할 수 있습니다.
- □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**를 모두 갖추어 대리구매자 또는 대리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할 수 있습니다
 - ※ 전체 대리구매 대상자, 대리구매자 및 구비 서류는 <첨부> 참조







- □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,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,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.
 - 또한 **손 씻기** 등 **생활수칙**을 잘 지키면서 **기침** 등 **호흡기 증상**이 있거나 **의료기관 방문** 시에는 **마스크**를 반드시 **착용**하시기 바랍니다.

- <첨부> 1.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
 - 2. '마스크 구매 확대' 홍보 포스터





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

대리구매 대상자	대리구매자	지참 서류
1 1940년 이전 출생자	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	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(동거 확인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 확인)
❷ 2002년 이후 출생자	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	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(동거 확인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 확인)
③ 장애인	제한 없음	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(장애인복지카드)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*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공인신분증 함께 제시
4 임신부	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	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(동거 확인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 확인) ③ 임신확인서(요양기관 발급)
⑤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	제한 없음	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(장애) 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
③ 요양병원 환자	요양병원 종사자	①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해당 요양병원장 발급) ②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(해당 요양병원장 발급)
7 병원(요양병원 포함) 입원환자	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	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(동거 확인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 확인) ③ 입원확인서(해당 의료기관 발급)
	요양시설 종사자	①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해당 요양시설장 발급) ②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
3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	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	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(동거 확인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 확인) ③ 장기요양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

* (외국인)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'외국인등록사실증명'을 마스크 판매처에 제시하면, 동거 가족(대리구매대상자)의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







<첨부 2>









